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8,052,415	13,141,572
일반회계	414,744,603	12,442,338
특별회계	23,307,812	699,234
공기업특별회계	12,233,834	367,01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233,834	367,015
기타특별회계	11,073,978	332,21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751	60,44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10,259	57,308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43,492	4,305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27,877	69,836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607,486	108,22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70,113	32,10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70,2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자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